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8%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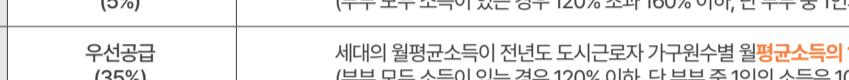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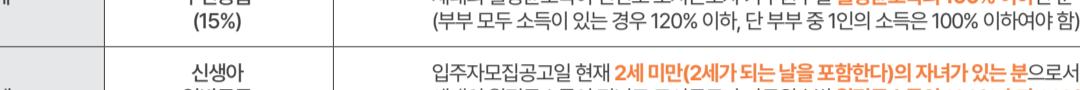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는 자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인 자
- ④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 (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로 신청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 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 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 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③ 지역 : 해당지역(청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전국) 거주자

④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⑤ 추첨

유의사항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태아를 인정받기 위한 청약자는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임신부부의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를 확인하며, 입양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본 안내문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

- (④미성년 자녀 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④미성년 자녀 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4년 적용

소득 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기구원수 적용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기구원수로 인정	
월평균 소득	근로자	- 청약자의 직계존속(청약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기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사업자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기구원수 적용기준	기구원수에 포함되는 기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월평균 소득	근로자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금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국토교통부 발간)으로 나누어 산정
	사업자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기구원수 적용기준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월평균 소득	근로자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금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국토교통부 발간)으로 나누어 산정
	사업자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